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16 선고 2024가단8681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8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(1)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2023. 4. 23.부터 별지(1)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3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(2)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조형우

별지